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2호 중 “참석할”을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로 한다.

제20조제1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제20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	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	제19조(공가)	-----	
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	-----	
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	12. -----	-----	
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	(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	-----	-----	
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	-----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	-----	-----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	-----	-----	
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	-----	
참석할 때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	-----	
		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	-----	

13. · 14.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⑬ (생 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⑮ ~ ⑰ (생 략)

⑱ 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

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

--

13. · 14.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⑮ ~ ⑰ (현행과 같음)

⑱ ----- 5년 -----

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u><신 설></u> <u>1. · 2.</u> (생략) ①9 · ②0 (생략)	-----. -----. <u>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u>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①9 · ②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444